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15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이성권・이헌승・신성범

최은석 · 안상훈 · 강승규

김용태・김 건・우재준

박정훈 • 배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음.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에서 반포 등이 되는 딥페이크의 특성상 반포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검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 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 키고자 함(안 제5조).

법률 제 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 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11 조 및 제11조의2의 죄
-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	第5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
措置의 許可要件) ① 통신제한	措置의 許可要件) ①
조치는 다음 各號의 犯罪를 計	
劃 또는 實行하고 있거나 實行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犯罪의 實行을 저지하거나	
犯人의 逮捕 또는 증거의 蒐集	
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許可	
할 수 있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u>및 제14조의3의 죄</u>
<u><신 설></u>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죄
<u><신 설></u>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74조제1항
	제2호의 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